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7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박해철·최민희·허성무

한민수 • 박균택 • 이학영

이수진 · 양부남 · 홍기원

윤후덕·문금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.

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,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,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,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3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.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무리한 공무원 의제(擬制)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, "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는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3조제3항과, 동일 취지의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함(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중 "규정 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」을"을 "규정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도 불구하고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 (생	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	②
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	
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<u>규정</u>	<u>규정</u>
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	<u> </u>
•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	
하며, 「형법」 그 밖의 법률에	
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	다만,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
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<u><단서</u>	공무원법」 제65조 및 제66조
<u>신설></u>	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은
	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
	법」에도 불구하고 파업, 태업
	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
	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	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62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62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о</u>)
<u><신 설></u>	③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
	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
	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
	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

	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	<u> 처한다.</u>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